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53
----------	-----

2019년 3월 6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월 30일, 문장길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1월 31일

3. 상정일자

○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3월 6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장길 의원)

1. 제안이유

- 정부에서 수매한 농수축산물을 학교, 기관에서 단체급식에 공급해 국내농수축산물 수요 확대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학교급식식재료 금지 대상을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식재료로 확대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

공립학교 장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

-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식재료 선정을 심의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점검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점검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학교급식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마.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 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각급 학교,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협력을 규정함(안 제8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1월 30일 문장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53호로 발의되어 2019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법 제4조의1)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운영 원칙²⁾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독급식 고등학교의 경우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부위탁(조리·배식 및 세척업무만 위탁)하여³⁾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1] 학교급식 운영 현황

(단위 : 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직 영	597	384	172	26	1,179
일부위탁	-	-	149	-	149
계	597	384	321	26	1,328

- 또한 식재료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⁴⁾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축·수산물 등 우수

1)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3)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2]

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⁵⁾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과 구매비용의 절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인근학교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단’을 구성하여 식재료 공동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2] 2018년도 하반기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현황

(단위 : 교)

학교 급별	급식 학교	공동구매 학교			식재료별 공동구매 학교						
		자치구 등 ⁶⁾	학교 간 ⁷⁾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통	김치	곡류	기타
초	597	221	136	357	3	25	131	189	295	190	0
중	384	99	71	170	33	53	86	75	143	82	0
고	321	47	21	68	14	18	28	20	56	36	0
특수	26	3	1	4	0	0	1	1	2	1	0
계	1,328	370	229	599	50	96	246	285	496	309	0

○ 한편 교육부의 「2018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지침에 따라 “학교 급식점검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급식과정 전반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을 위해 학부모·민간인·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학교 급식점검단을⁸⁾ 운영하여 위생·안전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 식재료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자치구학교급식지원센터’ 및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정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HACCP 지정 업체’ 이용 권장

6) 자치구 등 공동구매 : 서울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사업’ 참가로 비GMO 가공품 구매, 자치구에서 선별·선정한 품목별 우수한 식재료 업체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

7) 학교 간 공동구매 : 인근 2개교 이상 하나의 그룹으로 일괄 계약하여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

8) 학교급식점검단 구성 및 운영 [학교급식점검단 운영계획(체육건강과, 2018.3.)]

가. 구성인원: 교육지원청별 10명 내외

- 학부모(급식소위원회 학부모 위원), 민간인, 유관기관 관계자 : 2/3 이상 위촉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우선

- 전공 관련자, 학교급식 관련 활동이 활발한 자 우선

나. 위촉기간 : 2년

다. 활동내용 :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시 참여, 유관기관 합동점검(급식소, 납품업체 등)시 참여

[표-3] 2018년도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실적

교육지원청	급식학교수	구성인원	운영실적		비고
			운영횟수	참여인원	
동부	84	10	84	84	
서부	135	8	135	135	
남부	127	7	127	127	
북부	135	11	134	134	
중부	90	7	90	90	
강동송파	133	6	133	133	
강서양천	134	10	134	134	
강남서초	122	7	122	122	
동작관악	95	8	95	95	
성동광진	80	5	80	80	
성북강북	92	5	92	92	
합계	1,227	84	1,226	1,226	

-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교육부 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안전 관리 및 점검, 식재료구매,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급식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및 이미 운영 중인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동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한 검토(안 제3조)

-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공급업자에⁹⁾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공급업자”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로서 점검대상을 동 규정과 같이 학교급식공급업자로 한정할 경우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전체 1,328개 학교 중 일부위탁으로 운영되는 149개 고등학교만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급식에 있어서의 식재료의 품질 향상 및 위생안전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공급업자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안 제3조제1항 교육감 등의 책무 중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를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0, 2019. 2.14.).

2) 학교급식점검단 수당 지급에 대한 검토

- 학교급식점검단은 교육청 공무원 1명, 점검단원 1명과 함께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급식과정 전반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점검단원에게 교육부 지침 및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1회 당 40,000원의 점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¹⁰⁾

9)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2019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교육부, 2019. 1월),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체육건강과)

[표-4] 2019년도 급식위생점검 수당 예산편성 현황¹¹⁾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세부내역	소요예산
학교급식관리	급식위생점검수당	40,000원 × 1,235교 = 49,400

○ 동 조례안에는 실제로 집행되는 급식위생점검수당에 대한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바 점검단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 밖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안 제3조제3항의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사용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마련해 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학사일정에 따라 월간·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식재료 검수, 조리, 운반, 배식, 세척, 소독 등 학교급식 시설(조리장)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¹²⁾

이와 같이 학교급식 시설은 학교급식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인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시한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부득이한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2019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p.1769

12) 「학교급식법」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그 밖에 안 제4조제2항 학교급식점검단의 역할 중 제1호의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위생 감시”를 “교육청 주관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학교급식 급식위생·안전 점검 지원”으로,

제2호의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조사”를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모니터링”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점검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학교급식 점검단의 역할이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이나 급식소, 납품업체 등에 대한 합동점검에 참여하는 등 주로 조사의 업무보다 지원·점검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급식위생 뿐만 아니라 급식안전에 대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학교급식 급식위생·안전 점검 지원” 및 “모니터링”으로 규정하는 것은 동 업무의 안정적 추진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점검체계 마련을 위해 대상 범위를 수정하고 학교급식점검단의 위촉 단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함.

Ⅶ.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53
----------	-----------

제안연월일 : 2019년 3월 6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점검체계 마련을 위해 대상 범위를 수정하고, 조리장 사용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함.
- 학교급식점검단 업무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위촉 단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학교급식 점검체계 마련에 대한 대상 범위를 수정함 (안 제3조).
-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 학교급식점검단의 위촉 단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학교급식공급업자”를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다만,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위생 감시”를 “학교급식 급식위생·안전 점검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사”를 “모니터링”으로 수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수당) 학교급식점검단의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학교장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p> <p>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① (생략)</p> <p>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위생 감시 2.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조사 <p>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7조 ~ 제9조 (생략)</p>	<p>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학교장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p> <p>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① (원안과 같음)</p> <p>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학교급식 급식위생·안전 점검 지원 2.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모니터링 <p>3. (원안과 같음)</p> <p>제7조(수당) 학교급식점검단의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 ~ 제10조 (원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2.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3. “학교급식공급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

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①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점검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학교급식 급식위생·안전 점검 지원
2.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모니터링
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단원은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부모, 민간인, 유관기관 관계자가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

③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점검단의 운영 등) ① 점검단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급식위생·안전 점검 및 급식소, 납품업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에 참여하여 활동한다.

② 교육장은 점검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수시 활동 참여 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학교급식점검단의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동구매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 서울특별시청, 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